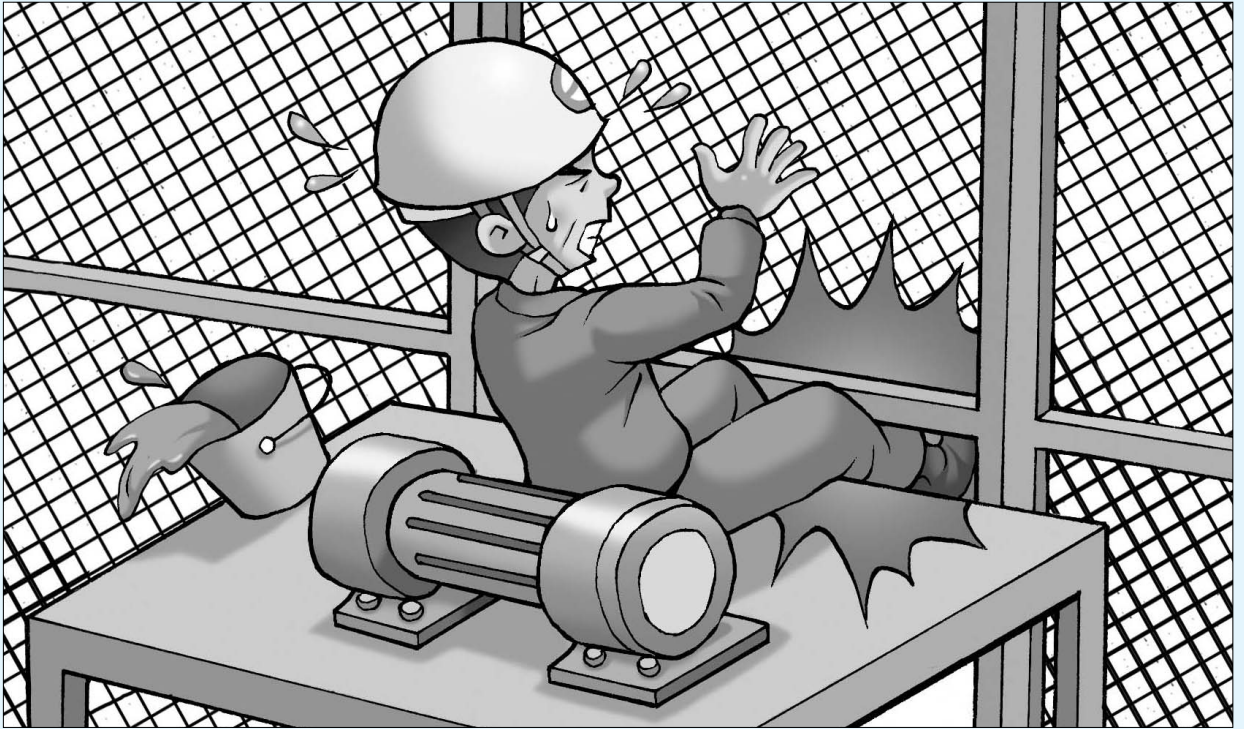


리프트 신규 설치 후 도장작업 중 협착



1. 재해발생경위

2006년 2월 ○일 14:10경 충남 소재 ○○(주) 인화공용 리프트 설치현장에서 재해자가 리프트 운반구 상부에서 마스트 용접부에 터치업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리프트를 상승시킨 후 2층 높이에서 정지시키려고 하였으나, 정지하지 않고 계속 상승하자 점검구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운반구와 고정벽체의 개구부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리프트에 임시로 설치한 펜던트스위치의 비상정지기능 제거
- 나. 리프트 설치·조립·점검작업시 작업지휘자 미배치

3. 동종재해예방대책

- 가. 리프트에 임시로 설치한 펜던트스위치 비상정지기능 유지
- 리프트 운반구 조작 펜던트스위치의 비상정지버튼은 수동 또는 자동운전모드와 관계 없이 급박한 위험상황 발



재해사례연구 협착사고

생시 항상 리프트를 비상정지시킬 수 있도록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

나. 리프트 설치·조립·점검작업시 작업지휘자 배치

리프트 설치·조립·점검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안전하게 지휘하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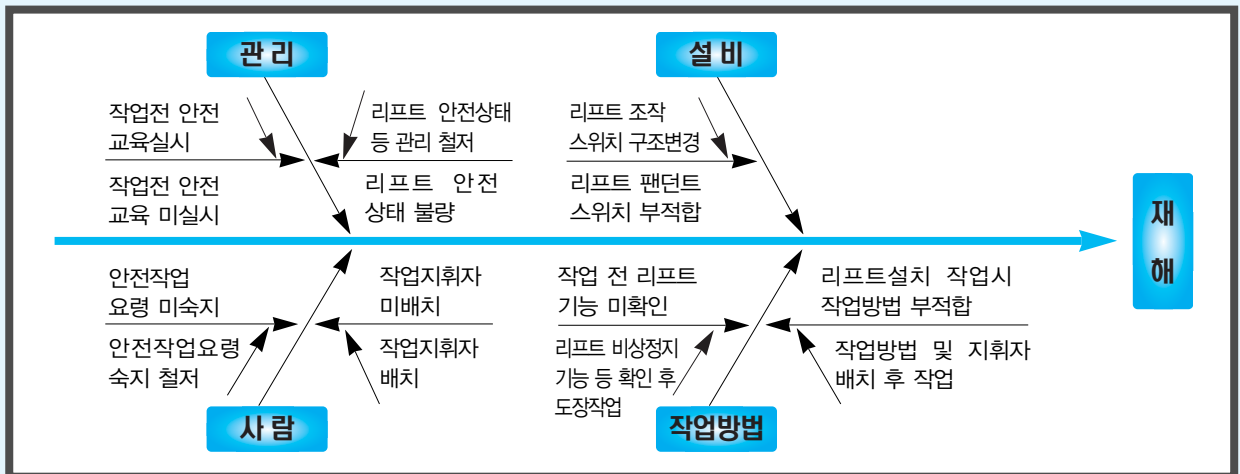
다. 긴급위험상황시 안전조치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철저

리프트의 구조와 기능 및 작업상황에 따른 위험상황 발생시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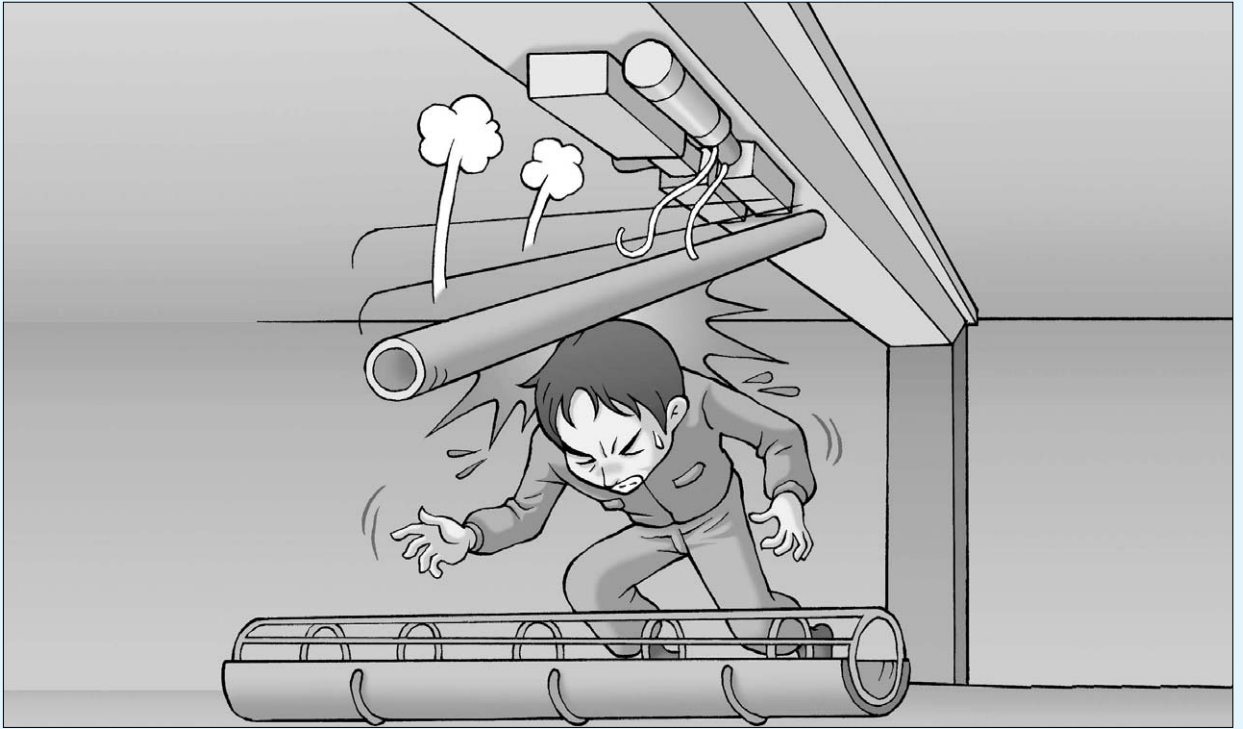
4.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재해 요인도



천장크레인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전용달기기구 낙하



1. 재해발생경위

2006년 1월 ○일 09:50경 경기도 소재 ○○공업(주) 콘크리트파일 제조 작업장내에서 재해자가 콘크리트파일 골조인 Shoe를 운반하기 위하여 천장크레인(호이스트 2.8톤+2.8톤)을 조작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천장크레인 밑에서 Shoe조립작업을 하고 있던 재해자가 낙하하는 전용달기기구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천장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불량
- 나. 와이어로프 단말 고정상태 불량
- 다. 안전모 미착용

3. 동종재해예방대책

- 가. 천장크레인 권과방지장치 성능 유지

천장크레인 권과방지장치는 권과시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고 제동하는 기능을 가지도록 항상 성능을 유지하고 천장크레인 Load Block 등 달기기구의 상부와 드럼 등 권상장치의 하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간격을



재해사례연구 낙하사고

25cm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함.

나. 클립에 의한 와이어로프 단말 고정방법 준수

와이어로프 직경이 16mm 이하에서의 클립 수는 4개 이상으로 하고 클립간의 간격은 와이어로프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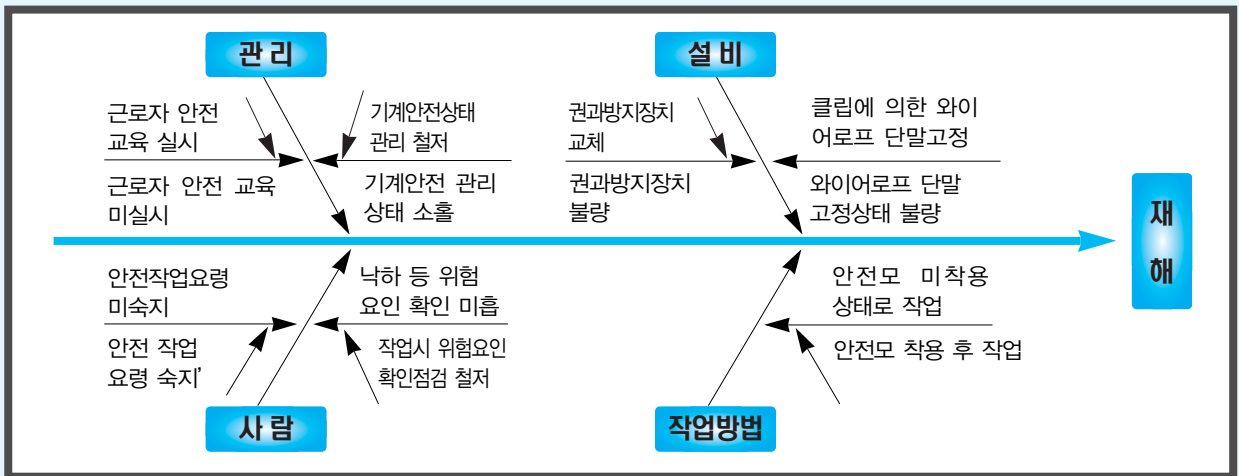
다. 안전모착용 철저

낙하물 또는 추락에 의한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장소에서는 안전모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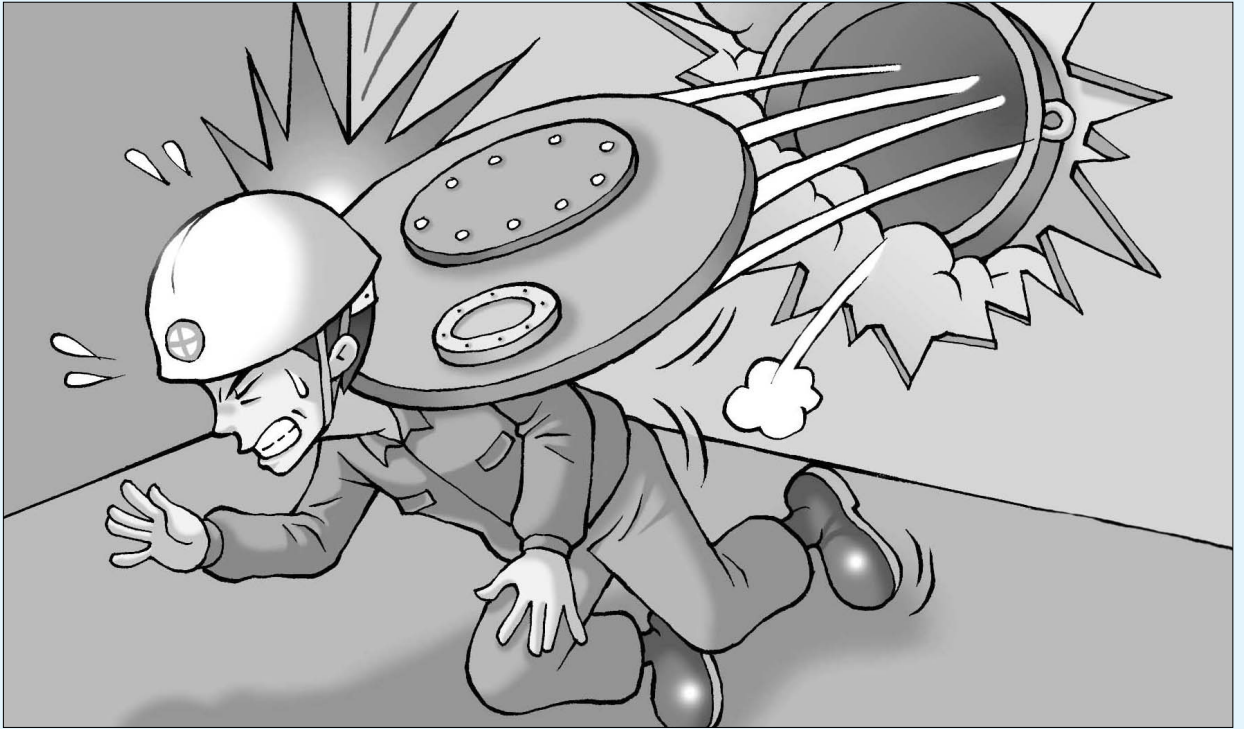
4.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재해 요인도



터보냉동기 기어박스 기밀시험 중 과압에 의한 폭발



1. 재해발생경위

2006년 3월 ○일 13:05경 경기도 소재 ○○전선(주) 터보냉동기 제작업체에서 납품된 기어박스에 고압질소를 주입하여 기밀시험(설계압력의 약 1.5배)을 하던 중 내부압력에 의해 기어박스가 폭발하면서 파괴된 주물파편이 비래하여 재해자의 머리에 맞아 사망한 재해임.

2. 재해발생요인

- 가. 압력방출장치 미설치
- 나. 기어박스 재질 불량
- 다. 기밀시험방법 불량

3. 동종재해예방대책

가. 내압테스트시 압력방출장치 설치
내압테스트를 위해 고압가스 주입시 기어박스 또는 가스주입구에 안전밸브 등의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여 과압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여야 함.



재해사례연구 폭발사고

나. 내압시험 규정 준수

기밀시험시 시험압력의 50%까지 서서히 승압시키고 이상이 없을시 10%씩 서서히 승압시켜 시험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승압시켜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기어박스에 대한 재료시험 실시 및 납품업체 품질관리 강화

기어박스 재질결함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주물제작 결함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납품업체 품질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4. 범위반사항

-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재해 요인도

